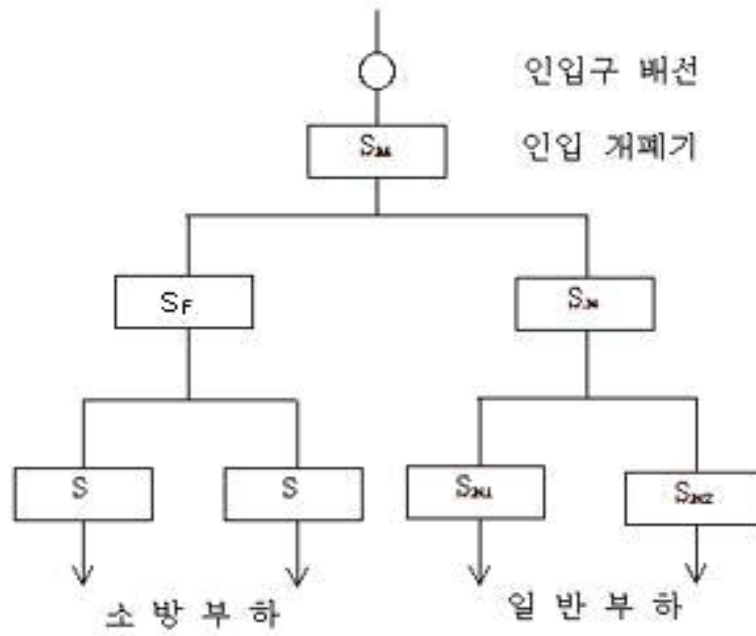


[별표 2] 저압수전의 경우(제6조제3항제3호관련)



- 주 1.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 S_M 이 S_N , S_{N1} 및 S_{N2} 보다 먼저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.
- 2. S_F 는 S_N 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.

약호	명칭
S	저압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